



- 주화에 구멍을 뚫거나, 굵어내 변형하거나 훼손한 경우
- 주화를 녹여 동파이프와 밸브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
- 주화를 녹여 팔찌, 목걸이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

우리 돈, 우리가 지킵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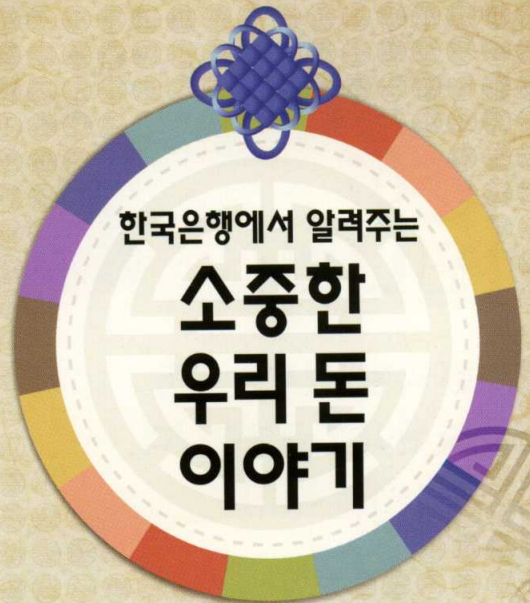
한국은행법

제53조의 2(주화의 훼손금지)

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해·분쇄·압착,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5조의 2(벌칙)

제 53조의 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
한국은행
THE BANK OF KOREA